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 5.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동물복지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동물실험 금지 동물의 범위와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윤리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개정 「동물보호법」이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에 따라 본 시행령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안 제10조)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전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철도경찰탐지견이 누락 되어 있어 추가하고, 이후 추가할 봉사동물이 있을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 마련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안 제12조)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1인 이상 반드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수의사를 추가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

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14조제3항)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

견의 관리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출입금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15조의2) 삭제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 (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1. 개정안 방침 : '20. 5월
2. 관계 부처 협의 : '20. 5월
3. 입법 예고 : '20. 5월
4. 규제 심사 : '20. 7월
5. 법제처 제출 : '20. 7월
6. 공포 : '20. 8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를 “관세청(그”로, “등에서”를 “에서”로,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을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검역 탐지견

4. 국토교통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철도경찰 탐지견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윤리위원회의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제14조제3항에 제3호의4, 제4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에 대한 감독

4의2. 법 제28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지도

6의2. 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제2항의 규정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동물실험 금지 동물)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 물을 말한다.	제10조(동물실험 금지 동물) ---- ----- ----- ----- -----.
4. (생 략) <u><신 설></u>	1. (현행 제4호와 같음) 2. <u>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 관을 포함한다) 에서 각종 물 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 는 검역 탐지건</u>
1. (생 략) <u><신 설></u>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u>국토교통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탐지 등 을 위해 이용하는 철도경찰 탐지건</u>
5. <u>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 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 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 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건과 검역 탐지건</u>	5. <u>관세청(그 ----- ----- ----- 에서 ----- ----- 마약 및 폭발물 탐지건</u>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2. (생 략)	7. (현행 제2호와 같음)
<u><신 설></u>	8. <u>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u>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법 제27조제4항 따른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③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u> 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단서 삭제></u> ③ <u>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u> 1. <u>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u> 2. <u>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u>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 <u>제7항까지</u> ----- ----- ----- -----

현행	개정안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①·② (생략) ③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생략) <u><신설></u> 4. (생략) <u><신설></u> 5.·6. (생략) <u><신설></u> 7. ~ 9. (생략) 제15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 제14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에 대한 감독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28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지도 5.·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7. ~ 9. (현행과 같음) <u><삭제></u>

현행	개정안
<u>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u> <u>·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② <u>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u> ④ <u>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간 20건을 초과할 수 없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u>	

현행	개정안
<u>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